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33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인철의원안, 권영진 의원안)	3
가. 개 요	5
나.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6
다. 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9

I. 개요

1.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33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25.
- (3) 회 부 일 : 2025. 3.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자로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

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조인철의원안, 권영진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121조의2) ○ 주요 대상: 고도의 기술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등 ○ 감면율: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 법인세·소득세 감면: 2018.12.31. - 취득세·재산세 감면: 2019.12.31.	○ <u>적용대상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추가(조인철의원안)</u> ○ 주요 대상: <u>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추가</u> ○ 감면율: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조세 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 ○ 대상: 기업도시개발 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새만금지구, 여수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 <u>적용대상에 도심융합특구 창업·이전기업 추가(조인철의원안, 권영진의원안)</u> ○ 대상: <u>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추가</u>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없음(조인철의원안) 2030. 12. 31.(권영진의원안)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조인철의원안) 2026. 1. 1.(권영진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부터 적용(조인철의원안, 권영진의원안)
□ 감면세액의 추정등 (제121조의19) ○ 대상: - 기업도시개발 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 감면세액의 추정등 (조인철의원안, 권영진의원안) ○ <u>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추가</u>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조인철의원안) 2026. 1. 1.(권영진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조인철의원안, 권영진의원안)

* 조인철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35), 권영진의원안 2025. 7. 1. 발의(의안번호 11194)

가. 개 요

□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①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조인철의원안), ②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3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려는 것임(조인철의원안, 권영진의원안).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임. 최근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근거 법률로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동 법률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됨.¹⁾ 현재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가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각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임.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2.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3. 대학·연구소·기업·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4.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동 법률은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으로 ① 디지털혁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부처별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검토, ② 국공유지 사용료, 부담금 등의 감면, ③ 임시허가·실증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²⁾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나.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제도는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

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25조

정 등으로 인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폐지된 제도이므로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업종별 투자 금액에 따라 5년(3년간 100% + 2년간 50%) 또는 7년간(5년간 100% + 2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EU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음.³⁾

이에 따라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였으며, 이후 2019년 3월 12일 EU 경제재정 이사회(ECOFIN⁴⁾)는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게 되었음.

둘째, 개정안은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 이외에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에 대한 감면조항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소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면서 지방세에 관한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⁵⁾

3) 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 한국, UAE, 몽골, 파나마, 바베이도스, 마카오 등 17개국

4) ECOFIN(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EU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

셋째,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적용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조문의 적용기간들이 이미 일몰되었으므로⁶⁾ 개정내용이 효력을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각호 생략)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가지기 위해서는 적용기간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다. 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개정안은 특구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비수도권에 성장거점을 육성하여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효과를 지향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30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전국 인구밀도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23년 기준 52.3%로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수도권 인구 및 인구밀도 현황]

(단위: 천명, 명/km²)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전국	51,836	516	51,745	515	51,628	514	51,713	515	51,751	515
수도권	26,021	2,193	26,054	2,195	26,053	2,195	26,190	2,206	26,304	2,215

자료: 통계청

[수도권 명목 지역내 총생산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1,936	2,008	2,043	2,062	2,224	2,328	2,404
수도권	993	1,046	1,066	1,091	1,175	1,229	1,258
수도권 비중	51.3%	52.1%	52.2%	52.9%	52.8%	52.8%	52.3%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소득(잠정), 2024. 12.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들의 특구입주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행 세제지원 혜택 등을 바탕으로 입지 및 고용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감면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지방이전기업⁷⁾·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⁸⁾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기(既) 운영 중이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⁹⁾,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등 고용·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둘째, 과도한 특구 지정 및 이를 수반하는 세제지원으로 조세지출 규모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특구제도에 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이 선정 되었고, 중앙정부는 효율성을 고려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

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9)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는 특구의 운영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¹⁰⁾.

분절된 특구의 지원으로 통합적·유기적 특구제도가 운영되지 못해 도심융합특구가 관련 기업들의 실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구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인프라,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지역 중에서 지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신설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함.¹¹⁾

문 의 처

02)6788-5154

10)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24.7.23.

1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2.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3. 대학·연구소·기업·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4.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